

일반 논문

한국의 다문화주의와 사회통합의 과제*

심승우 (성균관대)

국문요약

이 글은 서구와 한국의 다문화주의 정책 및 담론에 내재한 근본적인 한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특히 인종주의와 종족적 민족성을 극복할 수 있는 사회통합의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비판적 다문화주의는 지배적인 다문화주의가 근본적으로 뿌리 깊은 인종주의적 이분법을 극복하지 못했으며 지나치게 관용 담론에 의존하면서 현실 속의 지배와 불평등을 결과적으로 외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극복할 동력과 전략을 효과적으로 구성하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본 논문은 백인 중심의 인종적 위계가 한국적인 맥락에서 이주민, 소수자 집단에게 동형적으로 투영되고 있다는 측면을 강조하면서 한국적인 인종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배타적인 민족성을 재구성하는 것이 진정한 다문화 사회통합을 위한 근본적인 과제임을 강조했다. 특히 본 논문은 한국 사회가 향후 다문화주의 국가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다문화 사회통합이라는 공동선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시민의 권리와 의무, 시민성을 함양하는 원전주의적 국가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제어: 다문화주의 사회통합 이주민 에스니시티 원전주의

DOI URL: <https://doi.org/10.35369/jpus.14.2.202212.347>

* 이 논문은 2021년도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재원으로 통일기반구축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결과물임.

I. 들어가며

2021년 코로나가 한창이던 여름, 한 농부가 자살을 선택했다. 비닐하우스에서 일을 하던 이주노동자들이 갑자기 사라지면서 방울토마토를 적기에 수확할 수 없어 썩어 가는 것을 지켜보던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 때 사라진 이주노동자들은 농촌보다 높은 임금과 근로 조건을 보장하는 공장으로 ‘불법’ 이직을 선택했을 것이다. 코로나 시대, 외국인 노동력 유입이 제한을 받으면서 심각한 타격을 입은 곳은 주로 농어촌이지만 제조업 역시 코로나 이전에 비해 노동력 수급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비공식적으로 불법체류 노동자가 3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2023년에 우리 정부는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최대 규모인 외국인 노동자 11만 명을 유입하기로 결정했다.¹⁾ 기사에 의하면, 고용노동부는 제조업·농축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23년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제(E-9 비자) 도입 규모를 11만 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코로나로 어려워진 조선업 하청업체를 포함하여 중소기업과 농어촌 인력난을 위해 앞으로도 외국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표명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이주노동자 및 이주민의 유입이 더 이상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니라 한국의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상수가 되고 있다는 현실을 상기시킨다. 그리고 서구의 이민정책을 비판하면서 “우리는 노동자를 불렀는데 인간이 들어왔다.”는 막스 프리쉬(Max Frisch)의 경고처럼, 가까운 언젠가 이주노동자

1) 「열악한 현실 그대로인데...제조업·농촌에 외국인력 11만명 쏟아붓겠다는 정부」 『경향신문』 (온라인), 2022년 10월 27일,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10271600001>)

의 정주화를 허용하도록 국내외적으로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미 2020년 외국인의 숫자가 200만명을 넘어섰다는 인구통계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욱더 장기체류 이주민, 영주권과 국적을 취득한 이민배경의 국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에서도 인종적 다수집단과 소수 집단의 갈등과 대립이 더욱 심화될 수 있고 사회통합이 중요한 시대적 과제가 되리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이를 예고하듯,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에 경기도지사 선거 과정에서 불거졌던 “영주권 취득 후 3년 이상 경과한 이주민의 지방자치선거 참정권” 논란은 향후 장기체류 외국인이 증가할 경우에 나타나게 될 반다문화 현상 및 인종적 대립과 갈등, 충돌의 징후를 나타내는 정치적 사건이기도 했다.²⁾

이처럼, 이미 현실화되기 시작한 다문화 시대 속에서 본 논문은 소위 이민선진국으로 평가받는 서구의 주류 다문화주의를 정치철학적인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해보고 인종적 소수자, 소수문화 집단의 인권과 정체성을 존중하는 것 못지않게 사회통합, 정치통합의 과제가 근본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할 것이다. 현재 한국의 다문화 정책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이슈는 이주노동자와 이주여성 등 이주민의 인권 보장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고 이 문제가 중요한 과제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한국 사회가 다인종, 다문화 국가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대응해야 함을 강조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본 논문은 다문화 현상에 대한 단기적, 제도적 대안 제시보다는 사회통합을 위한 근본적, 철학적 문제제기의 성격이 강하며 어떤 점에서는 미래의 도상훈

2) 사실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외국인 영주권자들의 참정권을 폐지하자는 청와대 민원이 40만 명 이상의 지지 서명을 받게 되었고 이것이 언론의 보도를 통해 이슈화되었기 때문이었다. 당시 관련 포털 기사에는 많은 경우 수천 개의 댓글이 달리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글들은 영주권자의 참정권 폐지를 적극 지지, 옹호하는 내용이었다. 한편, 우리나라의 영주권 허가 및 국적 취득 조건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련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동안 지배적이었던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는 인종적, 종교적 소수자들에게 동등한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다수집단(백인)과 소수집단(비백인)이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진정한 다문화주의의 궁극적인 목표는 당구공 모델처럼 다양한 문화적 정체성들 간의 병립과 공존이 아니라 차이와 다양성, 이질성의 적극적인 표출과 부딪침을 통해 나타나는 갈등과 혼란 속에서도 개인적·집단적 정체성의 변화와 동시에 새로운 정치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임을 강조한다. 궁극적으로 이를 통해 공동체가 가진 정치, 사회, 문화적 역량도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차이와 다양성의 인정’이라는 다문화주의의 목표는 충분히 보편적인 가치를 가진다. 그러나 다양한 문화들의 사이좋은 공존 자체도 중요하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인종적, 문화적 다수집단과 새로운 이주집단, 소수집단의 갈등과 충돌, 소요와 혼란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서구의 현실을 고려할 때 독립적인 정체성들의 공존에 머무는 것은 지속 가능한 사회통합을 성취할 수 없다. ‘후발’ 다문화 국가로서 사회통합을 목표로 해야 하는 한국의 다문화주의는 다수와 소수, 주류와 비주류를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이념적 목표, 제도적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정치철학적 수준에서 서구적인 인종주의의 변형으로서 경제적 인종주의 및 관용 담론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II. 서구 다문화주의 담론의 근본적인 한계

2010년대 이후로 메르켈 독일 총리, 캐머런 영국 총리, 사르코지 프랑

스 대통령의 다문화 정책 실패 선언 그리고 2020년 코로나 사태가 극단적으로 진행되던 미국에서 단기체류노동자와 미등록노동자, 유학생 등에 대해 사실상의 추방정책을 선언한 트럼프 대통령 등의 반다문화 정책은 오랜 이주민 수용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사회통합을 만족스럽게 성취하지 못했다는 자기오류의 인정일 수 있다.³⁾ 문제는 그런 오류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될 수 있겠지만, 본 논문의 맥락에서는 통합의 정치이념으로서 다문화주의, 즉 ‘ism’에 대한 근본적 성찰의 빈곤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즉, 정치적 이상으로서 다문화주의의 규범적, 이념적 목표와 과제에 보다 천착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문화주의를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마르티니엘로의 보다 명료한 정의에 따르면, 다문화주의는 한 사회가 인종, 성별, 성적 취향 등에 따라서 구별되는 이질적인 주변문화로 이루어져 있고 이들은 서로 등등한 지위를 지닌다는 관점에서 출발하며 소수자의 주체성과 정체성을 인정하는 것을 함의한다.⁴⁾ 이러한 관점에서 다문화주의는 인종적, 종교적, 문

3) 한 가지 강조할 것은, 유럽에서의 다문화 실패 담론들은 다문화주의 정책으로부터 전면적으로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문화적 병립과 용인 중심의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책기조를 수정하고 사회통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다(물론 성공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즉, 이주민, 소수자들의 인권과 시민권을 대폭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계토화와 분열을 방지하기 위해 다문화주의 추진 방법을 혁신하는 노력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민선진국의 경우 다문화정책 실패 선언 이후 후퇴한 다문화 정책의 수준과 범위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급진적이며 이주민의 권리 보장 수준도 훨씬 높다. 사실, 단순하게 생각해도, 서구의 이민국가들의 다문화 정책 실패론의 내용과 함의를 그대로 한국에 적용하는 것은 서구의 다문화주의를 그대로 한국에 이식하는 시도와 유사하게 서구중심주의의 동형적인 오류이다. 이에 대해서는 한건수, 「한국사회의 다문화주의 혐오증과 실패론: 어떤 다문화주의인가?」, 『다문화와 인간』 제1권 1호 (2012) 참조.

4) Martiniello, M., 윤진 옮김, 『현대사회와 다문화주의』 (파주: 한울아카데미,

화적 소수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즉, 성, 인종, 계급, 라이프스타일, 성적 취향, 종교, 이데올로기 등 다양한 생활세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등장한 포스트모더니즘을 배경으로 공동체 내부의 다양한 소수집단, 하위문화 집단들의 권리와 발언권을 지지하는 흐름을 폭넓게 다문화주의로 정의한다. 이는 서구적인 단일보편적인 합리성 즉, 단일한 보편적 원리에 따라 전체사회를 조직화할 수 있으며 초문화적 보편적 통합원리를 추진하는 서구적 근대성에 대한 비판과 극복을 함축하는 것이다.

특별히, 본 논문이 주목하는 비판적 다문화주의는 인종, 성, 차이, 정체성 그리고 문화의 배후에 작용하는 차별과 배제, 불평등한 권력 관계에 특별히 주목하며 사회적 변화를 적극적으로 주창한다.⁵⁾ 비판적 다문화주의는 지배적인 다문화주의가 근본적으로 뿌리 깊은 인종주의적 이분법을 극복하지 못했으며 지나치게 관용 담론에 의존하면서 현실 속의 지배와 불평등을 결과적으로 외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극복할 동력과 전략을 효과적으로 구성하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1. 오리엔탈리즘과 인종적 위계

기본적으로 오리엔탈리즘은 문명의 상징으로서 서구의 정치경제적, 군사적 우월에 기반하여 이에 대비되는 비서구·동양의 열등하고 부정

2008), 87~110쪽.

5) 비판적 다문화주의의 대표적인 학자의 논문으로는 McLaren, P. "White Terror and Oppositional Toward a Critical Multiculturalism", David Theo Goldberg (ed), *Multiculturalism: A Critical Reader* (Oxford: Blackwell Press, 1994). 그리고 본 논문의 후반부에서 서구의 관용 담론을 비판하는 논거로 활용되는 브라운의 주장 역시 이 분류에 포함될 수 있다. Brown, W., *REGULATING AVERSION: Tolerance in the Age of Identity and Empir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6).

적인 요소들을 추출하여 야만과 후진, 저발전 등을 필연적으로 노정하는 동양적 정체성을 규정한다. 오리엔탈리즘은 원래 제국주의 시대에 열강의 각축이었던 중동 및 아프리카에 대한 서구의 인식을 의미했지만 보다 광범위한 의미로서 서양과 동양 사이의 단절과 대립을 기반으로 하기에 오리엔탈리즘의 자장 아래 있는 동아시아 국가를 포함하여 비서구 지역에도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서구는 이성적, 평화적, 문명적, 능동적인 반면에 오리엔트는 감성적, 폭력적, 야만적, 수동적이라는 극단적인 이분법이 서구 사회에서 다양한 보고서, 학술적인 글, 소설, 미술작품 등을 통해 형성되었다.⁶⁾ 이러한 오리엔탈리즘에 대한 서구 담론의 기본 구조는 근대적 인종주의 및 진보적 역사관과 결합되어 나타나는 바, 서양을 정점으로 하는 인종적 피라미드에서 우월/열등, 중심/주변, 주체/객체, 선/악 등 이분법적 구도에 입각한 엄격한 위계질서를 가지며 동양-아시아-이슬람-아프리카 등 비서구는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열등하며 계몽과 지배의 대상이 된다. 보다 정교한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최근 중국의 급부상 이전까지, 미국 패권주의를 상징하는 팍스아메리카가 근본적으로 서구의 정치경제적, 군사적 우월감을 정당화하는 ‘오리엔탈리즘’에 기초하고 있으며, 우리의 사회과학계에서 오랫동안 ‘진리’의 담론을 차지하고 있었던 근대화 이론 역시 근본적으로 인류 사회 및 인간형의 최정점에 서구적인 가치를 배치하는 오리엔탈리즘에 기반한다고 볼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이민국가이자 최대 규모의 인구를 자랑하는 미국 이민의 역사와 정책을 통해 나타난 결과를 보면 이러한 인종주의를 어렵게 않게 발견할 수 있다.⁷⁾ 19세기 말 이후 미국으로 이주하기 시작한 독일,

⁶⁾ 오리엔탈리즘의 서구적 기원과 서구 다문화 담론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 엄한진, 「서구가 바라본 오리엔트, 오리엔트가 바라본 서구」 『문화와 사회』 제19권 (2015).

캐나다, 영국, 이탈리아, 동유럽 국가 등 서구 출신의 유럽계 이민자들은 당시 미국의 주류집단과의 문화적, 생물학적 동질성이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동화되거나 적응할 수 있었고, 유럽 출신의 이민자들은 주류백인집단으로 쉽게 편입되거나 분류될 수 있었으며 2차대전 후 미국의 경제변영 속에서 백인 이민자들의 주류 세력들은 중산층으로 편입되었다.⁸⁾ 백인 주류 집단은 이제 비백인 이주민과의 관계 속에서 계급과 인종, 민족 간의 불평등한 정치경제적, 문화적 관계를 재정립하는 결과를 낳았으며 이러한 환경이 백인과 비백인을 경계로 하는 민족적, 인종적 차별과 갈등, 대립 양상을 확산시켜온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동화주의적 다문화주의는 다양한 비백인 소수문화가 백인중심의 주류문화에 포섭되어야 될 대상으로 여겨지는 근본적 특성을 가지게 된 것이다.

유럽출신의 백인집단과 그 외의 집단을 구분하고 지칭하는 방식을 보면 인종주의적 차별과 배제라는 미국의 다문화주의의 본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유럽출신의 백인이민자들의 경우에는 이탈리아계 미국인(Italian American), 프랑스계 미국인(French American), 아일랜드계 미국인(Irish American), 폴란드계 미국인(Polish American) 등과 같이 출신국별 문화적 배경의 차이에 따라 분류되고 지칭되는바, 이들을 모두 묶어 유럽계 미국인(European American)이라는 말은 거의 쓰이지 않는다. 그만

7)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의 보고서 참조. 최종렬 외, 『다문화주의의 이론적 패러다임과 국가별 유형비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8-17-02(2008).

8) 미국에서 1950년대 경제적인 호황이 지속되면서 값싼 노동력에 대한 지속적인 경제적인 요구가 증대되고 멕시코 등의 남미 출신 이주민과 필리핀, 한국, 중국 등 아시아 출신들이 이주민의 80%를 차지하게 되자, 유럽 출신의 백인 이주민들은 이제 다른 인종, 흑인이나 인디언, 나중에는 남미 및 아시아 출신 이주민과 차별화 전략을 성공적으로 구사하면서 유럽출신은 하나의 단일한 상위계급으로 도약했으며 백인은 곧 중산층 혹은 상위계급이라는 등식이 고착되기 시작했다. 미국의 다문화 담론 역시 백인문화와 그렇지 않은 문화와의 구별 짓기, 갈등과 대치는 인종주의적 성격을 강하게 가지는 것이다.

끔 백인 인종의 경우에 출신국가별, 민족별 문화와 정체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바탕 위에서 이들을 화합한 새로운 미국문화로 통일한다는 정치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그러나 나머지 비유럽 대륙 출신의 문화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라틴계 미국인, 아시아계 미국인 등으로 통칭하는 게 일반적인 바, 그만큼 고유한 국가별, 민족별, 인종별 차이와 다양성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곧 비백인, 비서구 문화의 고유한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백인주류 문화에 복속될 것을 사실상 요구하는 것이다.

이처럼, 미국의 다문화 정책은 그 주창하는 바와는 달리 현실적으로 유럽계 백인중심의 문화가 곧 미국의 주류 문화가 되고 그 속에 소수의 문화가 녹아 들어가는 주류적 다문화주의의 통합 이데올로기로 작용하는바, 20세기 중후반까지만 해도 다문화주의는 미국화 캠페인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으로써 이민자들의 문화적 전통을 모두 박탈하고 동시에 적절한 미국식 태도, 믿음, 행동들이 주입되는 것을 의미했다. 결국, 다문화주의적 레토릭을 구사하지만 실질적인 내용과 효과는 백인중심의 주류 문화에 주체-중심-문명-우월의 자리를 부여하고 여타의 다양한 민족적, 인종적 문화에는 객체-주변-야만-열등의 자리를 부여하는 의식적, 무의식적 이분법이 강력히 작동하고 있었으며 이런 위계가 정치경제적인 배제와 불평등을 양산하는 근본적인 원리였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비판적 다문화주의에 의하면, 서구의 지배적인 다문화주의는, 오리엔탈리즘에 내재한 지배적인 권력관계를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소수 문화를 관리하는 통치전략이었다. 그러므로 다문화주의는 당연한 것으로 간주되는 서구적 보편성을 특수화하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어떤 문화이든지 보편적인 진리를 요구하는 순간, 수평적인 다문화주의는 사실상 왜곡된다. 백인적인 문화가 인류적 보편성의 자리를 차지한다면 이는 시공간을 초월한 문명의 보편성과 중심성을 표상하는 것이고 이

에 비해 비서구 문화는 하나의 특수성으로만 존재하여 상대주의적 지위를 부여받게 된다.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칸트식의 절대적인 정언명령의 자리를 백인다운 문화와 도덕이 차지하게 되고 비백인적인 것들은 정의롭지 못한 것, 따라서 교정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규범적·비판적 다문화주의 관점에서 모든 문화집단은 언제나 ‘특수성’으로 존재해야 한다. 특히, 보편적인 인간을 상징하는, 초월적인 백인 남성 중심적인 유럽 문화를 개별적·특수적인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는 유럽문화의 헤게모니에 대한 비판과 저항을 강조하는 것이다.⁹⁾ 비판적 다문화주의는 백인 및 주류 집단 중심의 지배 문화에 소수자들이 종속적으로 편입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유입된(등장한) 이주민들이 공동의 문화형성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치문화를 구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한편, 최근 서구의 반다문화주의 혹은 다문화 정책의 한계는 인종주의 외에도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한다. 예컨대, 종교의 세속화라는 일반적인 근대성의 특징과 달리 2001년 9·11 테러 이후 종교가 정치의 영역에서 전면적으로 등장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탈세속사회(post secular society)’의 현상은 특히 유럽적 이슬람(Euro-Islam)의 정치화 현상, 유럽에서 이슬람 공동체의 성장 및 유럽의 다종교화 현상은 서구에서 백인 중심의 인종주의를 재강화하는 촉진제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시민들의 세계관과 가치관, 정치관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해석공동체’로서 종교가 어떻게 공론장에서 공식적인 발언권을 얻고 다양한 종교적 신념과 공존할 수 있을 것인지가 향후 서구 다문화주의의 향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¹⁰⁾

⁹⁾ McLaren, *On Nationality*, pp. 53-60; Martiniello, 『현대사회와 다문화주의』, pp. 40-43.

¹⁰⁾ 사실 종교의 탈세속화 현상과 관련하여 유럽의 다문화 현상에 대한 논의가 보

2. 관용 담론의 한계

미국과 유럽에서 주로 비서구 이주민들의 불만과 저항, 소요 사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서구의 주류 다문화주의는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자는 명목 하에 관용을 핵심적인 해결책으로 제시해 왔다. 주지하듯이, 관용은 남의 잘못 따위를 너그럽게 용서하고 용인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의미하는바, 즉 어떤 주체(개인이나 집단)가 자신이 나쁘다거나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타자나 표현, 행동 등을 박해하는 등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권력행사를 삼가고 그 공존을 인정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관용담론은 종교전쟁을 통해 소수/비주류 종교집단에 대한 다수/주류 집단의 허용을 통해 갈등과 분열을 관리하면서 공동체의 붕괴를 막겠다는 통치전략으로 볼 수 있으며 ‘사상의 자유’ 등 일반적으로 그 적용이 확대되어 강자(다수자)는 약자(소수자)의 자유 및 권리를 탄압해서는 안 된다는 신념을 담고 있다.

다문화주의적 맥락에서도 관용은 보편성에 대항하는 특수한 것들의 분출을 관리한다는 전략으로 정치적·문화적·종교적 주류집단의 입장에서 주변인들과 외부성을 통제하려는 효과를 의도하고 있다. 주류집단의 특권성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소수 집단들의 비판과 저항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서 관용은 지배적인 문화집단에 대비되는 비주류, 소수, 외부집단의 차이와 이질성을 용인하고 동등한 가치를 인정해 준다는 것을 핵심적인 원리로 삼고 있다. 특히, 관용 담론은 개인적 차원에서 다른 문화집단에 대한 거부감과 적개심, 분노 등을 표출하지 말거나 완화시키는 개

완되어야 한다는 심사자 선생님의 유의미한 조언이 있었다. 그러나 본 논문의 목적과 맥락, 기획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이 문제는 독자적인 논의가 필요하며 본 논문의 일관성과 지면상의 제약으로 인해 근대적 인종주의의 한계에 대한 논의로 일단은 논문의 범위를 한정하려 한다.

인적 차원의 인성 및 미덕을 강조하는 바, 이러한 관용 담론은 서구 사회에서 백인과 비백인, 다수집단과 소수집단 사이의 갈등과 분열이 단순히 문화적 차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차별과 배제, 불평등에 있다는 것을 은폐시키거나 부각시키지 못하게 만든다.

브라운은 서구의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다양한 사회적·경제적·정치적으로 불평등한 권력관계이며 이러한 정치경제적 질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으려는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를 비판한다.¹¹⁾ 물론 관용 담론은 다양한 정체성간의 갈등을 중재하거나 완화하고 소수자와 약자를 보호한다는 공식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또 현실적으로도 온건한 해결책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백인 중심적인 관용에 의하면, 다문화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사회적·경제적·정치적 문제의 원인은 편견을 가진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되어 버리며 구조적인 배제와 불평등을 간과하게 만든다. 결국 다수집단/소수집단 사이의 지배와 불평등 같은 문제를 개인적 차원의 편견이나 증오의 문제로 환원해 버리면서 권력관계와 관련된 정치적인 문제를 개인화하고 그 원인을 특정한 태도의 문제로 돌려버리는 탈정치적 접근이다.

이처럼 백인과 비백인, 다수와 소수, 중심과 주변 등의 권력관계에 기반하여 차별과 불평등, 배제 등 발생 가능한 정치적 대립과 투쟁을 공적 공간에서 적극 표출되지 못하게 된다면, 결국 기존 사회의 우월/열등의 이분법적 구조 및 지배적인 규범과 이미지-미국 사회의 경우에는 백인·부르조아·남성·기독교도-을 재생산하는데 일조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리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브라운에 의하면, 소수자의 정체성에 특수성을 부여하고 관용받는 자리를 부여함으로써 소수자 집단

¹¹⁾ W. Brown, *REGULATING AVERSION: Tolerance in the Age of Identity and Empire*, ch.1.

은 관용을 통해 문화적 인정을 받는 대신에 주변부적 위상에 머무르게 되는바, 그만큼 정치적, 경제적인 차별과 불평등을 극복할 가능성이 줄어들어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유주의의 핵심적인 논리인 관용에 대한 의존만으로 다문화주의는 인종적 차이에 내재하는 차별과 배제, 불평등을 극복할 수 없으며 진정한 차이와 다양성의 평등과 사회통합을 성취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므로 소수집단의 입장에서는 차이의 정치화 전략을 적극 모색하고 있는 바, 관용은 공동체 내부에 존재하는 인종, 종교, 문화적 등등의 차이를 경계로 하는 정치사회적, 경제적인 차별과 불평등의 문제와 함께 제기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차이를 인정하고 관용하는 것을 넘어서 차이가 어떻게 차별과 불평등을 구조적으로 양산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그런 구조의 개혁을 위해 더 강한 민주주의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Ⅲ. 한국 사회의 다문화주의?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다문화 사회를 표방하는 정책이념을 선포하면서 2006년 4월 26일 여성가족부, 교육인적자원부, 외교통상부 등 12개 부처가 함께 범정부 차원의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을 발표한 이후 2007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2008년 12월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08~2012)’이 실시되고 2010년 5월에는 ‘제1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다문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면서 지금까지 이르고 있다.¹²⁾

¹²⁾ 김영재,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 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이주노동자

2019년 11월 기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수는 222만 명으로, 총인구(51,779,203명) 대비 4.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바, OECD는 총인구 중 외국인, 이민2세, 귀화자 등 '이주배경인구'가 5%를 넘으면 다문화·다인종 국가로 분류한다.¹³⁾ 2010년 기준으로 국내체류 외국인의 숫자가 100만 명 정도임을 고려한다면, 지난 10년 동안에 2배 이상의 급격한 외국인 인구 상승세를 기록해온 것이며 많은 전문가들이 그 증가율은 더욱 가파라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2022년 10월 7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3년 및 중기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은 2021년 0.81명에서 2026년 0.69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¹⁴⁾ 합계출산율은 15~49세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합계출산율이 0.76명대를 기록해 0.7명대로 진입한 후 2023년 0.74명, 2024년 0.71명, 2025년 0.70명으로 점차 하락하다가 2026년에는 0.6명대까지 추락한다는 것이다. 지난 2012년만 해도 1.30명이었던 출산율이 불과 10여년 만에 반토막 나는 것이다. 사실, 다문화주의의 규범적 이상에 동의하지 않는 많은 국민들도 이러한 자연인구감소에 대응해 이주노동자 및 결혼이주여성 등 이주민의 유입에 대해서는 실용적, 경제적 필요에 의해 마냥 반대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므로 소위 순혈주의적 단일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한국에서 비순혈주의 이주민과 이주 배경을 가진 국민이 현재의 5%를 넘어 10%로 향하게 될 경우에 정주민 집단과 이주민 집단의 갈등과 분열을 어떻게 극복하고 유대와 연대의 대한민국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이다.

이하에서는 국내 체류 외국인 구성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이주

정책을 중심으로」 『평화학연구』 제21권 4호 (2020), 325~326쪽.

13)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 『2019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2020).

14) 「응애~ 아기 울음소리 끊긴 한국...“합계출산율 2026년 0.6명대로 하락” 『아시아경제』(온라인), 2022년 10월 7일,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100709121480141>>

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의 정책 특성 및 한계를 간략히 살펴보고 사회통합의 맥락에서 어떤 성찰이 요구되는지를 모색해 볼 것이다.

1. 이주노동자와 한국 정부의 다문화 정책

특히, 대한민국의 국내 체류 외국인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정책은 기본적으로 ‘차별배제모형’에 입각하여 ‘방문노동자제도’를 채용하는바, 이것은 이주노동자들이 국내에 이민자로 정착하는 것을 최대한 차단하려는 정책으로, 이주노동자의 위상은 일정 기간 배당된 기업주에 ‘할당된’ 존재로 규정되며 이들은 사업장 내에서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는 동시에 정부의 강제출국 위협과 인종주의적 차별에 노출된 상황이다.¹⁵⁾

무엇보다도 이주노동자들은 대한민국 경제의 최하단의 3D 업종에서 중소기업의 유지와 생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할 권리’를 온전하게 부여받지 못하고 있으며 정치의 대상이 아니라 치안의 대상으로 간주된다. 현재 대한민국의 선거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영주권을 취득한지 3년이 지난 외국인도 참정권을 부여받고 있지만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은 영주권에 대한 신청 자체가 봉쇄되어 있다.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소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해야 하는데 고용허가제하에서 과거에는 3년, 개정 허가제에서는 특별한 사유를 인정받아 최장 4년 10개월까지 노동할 수 있도록 했다. 때문에 이주노동자는 합법적으로는 5년 이상 체류할 수 없기 때문에 참정권 부여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것이다. 아렌트식으로 말하자면, 공동세계에 참여할

15) 이하 이주노동자 정책 및 한계에 대한 철학적 논의로는 기본적으로 다음의 논문에 기반하고 있다. 심승우, 「인권의 급진화와 이주노동자의 주체화」 『다문화와 평화』 제7권 1호 (2013).

자격을 박탈당한 자들, 그들은 그리스 아테네 시대에는 사실상 노예를 의미한 것이었으며 자신이 살아가는 공간에 자신을 표현할 권리를 박탈당한 자들이다.¹⁶⁾ 아감벤이 생생하게 묘사했듯이, 이들은 ‘날 것의 삶 (bare life)’으로서 정치공동체 밖으로 내던져서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국가권력에 노출되어 있는 전형적인 호모 사케르라고 볼 수 있다.¹⁷⁾ 같은 이주노동자라도 중국 동포 출신에게는 어느 정도의 예외 규정을 두어 영주권 신청의 기회를 최소한이나마 열어 놓고 있음을 고려할 때, 대부분이 빈곤한 아시아 국가 출신인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배제는 직접적으로 혈통과 인종에 의한 배제의 성격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이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 가정 등에 다문화 정책에 집중하면서 이미 이주노동자는 정책의 대상에서 배제된 상황임을 고려한다면, 이주노동자에게 절실한 것은 문화권이냐 참정권이 아니라 인간다운 노동권이고 생존권이라는 주장은 일리가 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가 정치의 대상이 아니라 치안의 대상으로 간주된다는 것은 사실상 일터와 마을에서도 동등한 시민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것이며 이는 결국 인간이자 노동자로서 자신의 몫을 주창할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전히 많은 불법체류자가 양산되고 있는 것도 사실 인간이자 노동자로서 그들의 절박한 목소리와 필요에 우리 사회가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¹⁸⁾ 여성가족부와 복지부, 교육부 등 여러 부처들이 종합적으로 관여하는 결혼이주여성과 달리 이주노동자는 특히 법무부의 집중 관리 대상이며 이는 현행 단기체류 순환형 이주노동 정책

16) Arendt, Hanna, 이진우 역, 『전체주의의 기원』 1권 (파주: 한길사, 2006), 533-539쪽.

17) Agamben, J., 박진우 옮김, 『호모 사케르-주권 권력과 벌거벗은 생명』 (서울: 새물결, 2008), 48쪽.

18) 심승우, 「인권의 급진화와 이주노동자의 주체화」, 12~15쪽.

이 근본적으로 어떤 성격을 갖는지를 명료하게 보여준다.

사실 이주노동자들이 가장 절박하게 원하는 것은 고용허가제의 개선과 안전한 작업환경 등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 주를 이룬다.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 들어올 때 이들은 작업장 및 근로 환경에 대해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입국한지 며칠 후에 바로 작업장으로 투입되기 때문에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그들로서는 어떤 요구나 항변, 노동권에 대한 법적인 지식이 전무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언어적인 소통도 안 되고 안전교육도 부실하고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 손가락, 손, 팔 등 심각한 신체적 피해도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율은 우리나라 노동자보다 2배 이상 많이 발생한다. 2018년 기준으로 하루에 20명이 넘는 이주노동자들이 노동현장에서 다치거나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이주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신고율은 24%로 추정되는 데, 산재신청을 하지 못한 이주노동자를 포함하면 더 많은 노동현장의 이주노동자들이 다쳤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¹⁹⁾

고용허가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이자 이주노동자들이 가장 염원하는 개혁의 대상은 성실하게 일하고 법을 준수한 이주노동자는 사업장 환경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해지는 것인 동시에 ‘사업장 변경의 3회 제한’이라는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절박하게 원하고 있다. 개정된 고용허가제는 원칙적으로는 사업장 변경을 3번까지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변경 사유가 사업주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휴업, 폐업, 임금체불, 폭력에 의한 것이라야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변경사유가 모두 사업주의 선택에 의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이주노동자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해서는 사업장을 변경할 수가 없으며, 더구나 이직신청을

19) 「몸이 잘리고 부러지면 이주노동자도 똑같이 아프다」 『경향신문』(온라인), 2019년 12월 17일, <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1912171850001>

하더라도 사업주의 승인이 있어야 직장변경이 가능하고 승인 없이 이직할 경우에는 작업장 이탈로 간주하여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전락하게 된다.²⁰⁾ 더구나 막연한 정보만 믿고 어렵게 사업장 이동을 하더라도, 기대와 달리 대단히 열악하고 폭력적인 노동환경에 처하게 되더라도 3회 이동 제한 때문에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기 않기 위해서는 비인간적인 대우를 참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 특히, 임금체불이나 폭행 등 학대 사실 역시 이주노동자 스스로 입증해야만 업체변경이 가능한데, 한국어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주노동자가 노동청이나 법원에 제출해야 할 방대한 자료를 작성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²¹⁾

이주노동자와 이주노동자지원단체 활동가 등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우선적으로 ‘사업장 변경 3회’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 비인간적인 사업주를 회피할 수 있는 합법적인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한국 정부가 적절한 기준을 두고 그에 부합하는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체류 연장 기회를 부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조치들이 전향적으로 이루어져야 여전히 높은 미등록 노동자 발생 비율이 감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2. 결혼이주여성과 한국 정부의 다문화 정책

한국정부는 2005년부터 <여성이민자가족의 사회통합지원>, <다문화가족지원법> 등 사회통합관련법을 제정한바, 한국의 대표적인 다문화 정

20) 정성신, 「미등록 이주노동자에서 이주민 미디어 활동가로 : MWTV 미디어 활동가 사례를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제18권 1호 (2012), 35~38쪽.

21) 고용허가제 세부조항의 법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음의 보고서 참조. 이진영, 「이주노동자 정책을 보는 시각과 정책 형성」 『한국의 다문화 사회통합정책: 종합평가와 전망』, 2012-12 사회통합위원회 용역보고서(2012), 89~114쪽.

책은 주로 결혼이주여성 및 한국인 남성으로 구성된 다문화 '가정'을 주 대상으로 하며 한국인 남편 중심의 가족 유지를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²²⁾ 이주노동자 등 다른 외국인 이주민에 비해 한국 정부의 다문화 정책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 정책은 한국 다문화주의의 상징이 되어 왔지만 규범적인 한계 역시 그대로 노출된다.

다문화주의의 최소한의 전제 조건은 이주민의 고유한 정체성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하며 이들의 평등한 인권과 시민권을 어느 수준에서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비판적 다문화주의에 의하면, 사회통합은 소수문화가 융합되는 과정에서 차별, 배제되지 않고 개인이나 집단의 동등한 존엄성과 주체성을 존중받으면서 평등한 시민동료 및 집단이라는 관계 속에서 공동체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을 의미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다문화'를 내걸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온 결혼이주여성 정책은 지나치게 동화주의적 입장에 경도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바, 사실 동화모형(assimilationist model)은 인종적 다양성 및 다문화 현상에 대응하는 보수적인 정책모델로서 주류집단으로의 흡수를 의미할 뿐 진정한 다문화주의적 통합이라고 볼 수 없다.

실제로 한국의 다문화주의를 상징하는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정책 기조 역시 한국 문화의 우월성을 전제로 적응과 동화를 일방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심지어 '외국인 배우자를 지원하여 가정을 지키도록 하는 인구정책'을 의미한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가난한 나라 출신이 대다수인 결혼이주여성들은 경제적, 사회적 약자로서 가족제도 안에서 아내, 어머니, 며느리로서 역할수행을 요

22) 본 논문과는 다른 맥락에서 한국 정부의 결혼이주여성정책의 관료주의적 팽창과 효과성을 비판한 탁월한 논문으로는 다음을 참조. 김혜순, 「결혼이민여성의 이혼과 '다문화정책': 관료적 확장에 따른 가족정책의 몰이민적, 물성적 결합」 『한국사회학』 제48권 1호 (2014).

구받고 있는 것이며 본질적으로 가족의 유지와 인구의 생산·재생산 노동을 통하여 저출산·고령화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도구주의적 시각이 지배적이다.²³⁾ 출산과 가족의 유지 자체는 개인과 공동체 수준에서 중요한 가치를 갖지만, 한편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의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과 실존적 주체성 등은 주변적인 문제로 간과되고 있으며 동등한 권리를 가진 국민으로서의 위상과 주체성 역시 취약하다고 평가된다.

상대적으로 부유한 국가의 국민으로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실존적 욕망을 대가로 사실상 자신들의 소중한 정체성에 대한 존중과 표현을 포기하거나 다양한 형태의 모욕과 차별을 인내하도록 은근히 혹은 노골적으로 강요하는 셈이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듯, 한국으로 귀화한 결혼이주여성들은 일정한 결혼기간을 거쳐 자격을 얻게 되면 법적으로 ‘국민’이 되지만 이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시민적 권리를 행사하는 데 많은 주관적, 객관적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고 가족의 울타리에 고립되어 살아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 결혼이주여성들의 가족과 마을 등에서 자신들의 인종적·문화적 정체성을 인정받고 표출하는 최소한의 다문화주의적 제도가 미흡한 상황에서 결혼이주여성과 그 가정의 사회통합을 기대하는 것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사고이며 향후 이러한 다문화 가정의 2세, 3세들이 대한민국에 진정한 소속감과 공동의 정체성을 갖기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결국 우리나라 결혼이주여성 및 다문화 가정 정책은 본질적으로 순혈주의적 한국인 가정과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비(非)다문화주의적, 반(反)다문화주의적 인구관리정책의 속성이며 가장 기본적인 사회통합의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23) 변보기, 「결혼이주여성의 다문화시민권과 사회통합」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통권 38호 (2017), 459~467쪽.

IV. 다문화 시대와 사회통합의 과제 : 변용된 인종주의와 민족성의 재구성

1. 다문화 사회통합의 방향

사회통합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갖는 동시에 동등한 주체로서 공동의 정체성을 가지고 연대와 유대의 관계 속에서 국가 발전이라는 목표를 공유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통합은 인종, 종교, 문화 등 다문화적 차원뿐만 아니라 성, 연령, 지역, 재산, 직업, 학력 등 다양한 계급, 계층 간의 갈등과 분열을 넘어서 화합과 공동체 의식을 성취하는 것이다.²⁴⁾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사회통합에 있어 주요 과제는 소외된 계층과 사회적 약자 등이 노동시장과 소득 문제 등의 경제적, 사회적 영역뿐만 아니라 정치적·포괄적인 의미에서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의 보장을 통해 시민적 주체로서 삶의 질과 권리의 동등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통합 정책이 적용되어야 하는 영역으로는 인권과 시민권의 전 영역을 아우르는 것으로 교육, 주거, 취업, 노동, 주택, 의료보전뿐만 아니라 평등한 시민동료로서 공동체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참정권의 문제까지도 포함된다.

²⁴⁾ 유럽 다문화주의와 사회통합의 관계 및 모순에 대한 최근의 논의로는 다음의 논문 참조. 김형민, 「사회통합을 위한 패러다임 모색」 『통합유럽연구』 제12권 1호 (2021).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상호문화주의는 사실 근본적으로 서구의 주류 다문화주의, 관용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불평등한 정치경제적 권력관계가 명확한 현실 속에서 '문화 간의 대화'라는 갈등을 회피하는 전략에 불과할 수 있다.

한편, 다문화 정책(multi-cultural policy)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하고 이들의 인권 보호와 사회통합 등을 지원하는 동시에 정주민 집단과 이주민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것으로 폭넓게 정의할 수 있다. 이질적인 문화를 가진 외국인의 유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한국 사회의 갈등과 부작용, 이로 인해 예상되는 사회적, 경제적 비용, 외국인의 유입으로 인한 국민 및 국가 정체성의 혼란, 내국인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들이 취업하거나 직장에서 일을 할 때 발생하는 차별과 특혜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이다. 그러므로 다문화 정책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소수 인종으로서 차별받지 않고 한국인과 더불어 생활할 수 있게 지원하는 사회통합정책과 공유하는 영역이 상당 부분 존재한다.

그러므로 다문화 사회통합의 주요 대상에는 한국 국적을 가진 빈곤계층(장애인, 노인, 비정규직 등)뿐만 아니라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민 특히, 국내 취약계층과 결혼한 이주여성이나 저임금 노동력이 다수를 차지하는 외국인 이주노동자 등까지 주요 정책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문화 사회통합 개념이 이주민들이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내국인과 동등하게 향유하는 것이라면 소극적인 측면에서는 국가가 차별 방지를 통하여 이주민들의 인권을 옹호하고, 적극적인 측면에서 사회경제적 지원은 물론 이주민과 국민이 상호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것까지 포함될 수 있다.

그런데 다문화 사회통합이 정주민과 이주민, 내국인과 외국인 등으로 상징되는 차이와 다양성의 단순한 병립과 공존 이상의 것을 추구한다면, 다문화 사회통합은 소수자와 다수자를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 줄 수 있는 정치통합, 새로운 정치공동체의 구성 전략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수준의 다문화 사회통합은 외국인들의 인권을 존중하거나 다양한 소수문화들의 고유한 정체성을 인정하고 그들의 문화적 권리에 대한 평등한 대우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다. 즉,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문화집단들 간의 사이좋은 병립을 넘어서 주류 사회의 시민이든 새로운 인종집단이든 시민들 간 상호의존적인 공동운명체를 구성해 나가는 새로운 공동의 정체성 전략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다문화 사회통합은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종족적 차이와 다양성, 갈등과 대립, 충돌에도 불구하고 공존과 통합의 공동체를 가능하게 만드는 정의로운 윤리적-정치적 원칙들을 도출하고 정치공동체를 발전시켜나가는 일련의 신념과 행위를 요구한다. 그러므로 다문화 시대, 이주민까지 포함하는 정치통합의 제1원칙은 다원화된 사회에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공동의 세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지금까지 익숙하지 않았던 타자나 소수자들의 대화가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을 포함하여 이방인 혹은 소수자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경청되는 공동의 세계를 구성해야 하는 것이며 이는 아렌트의 ‘권리를 가질 권리’를 통한 공동세계의 구성, 밀러의 “그 나라 태생의 사람들과 이주자들을 하나로 묶는 지속적인 민족형성 과정(a continuing process of nation-building)”을 강조하는 것이다.²⁵⁾

2005년 참여정부가 다문화 정책을 공식적으로 표방한 이후 상대적으로 짧은 시기 동안에 한국의 다문화 정책은 이주민의 인권과 사회통합 정책에 있어 일정 이상의 진전을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지적한 등속의 과제들은 사회통합을 위해 반드시 개선해야 할 문제이며 다문화주의가 갖는 규범성과 진정성을 위해서는 더 많은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그러나 본 논문은 보다 근본적인 관점에서 진정한 사회통합, 미래지향적인 정치공동체 구성을 위해서는 논문의 앞에서 살펴본 서구

25) Miller, D., 「Interview with Professor Miller: 밀러 교수와의 대화」, 곽준혁 편, 『경제와 편견을 넘어서: 우리시대 정치철학자들과의 대화』 (파주: 한길사, 2010), 210쪽.

의 주류 다문화주의의 한계 즉, 위계적인 인종주의를 극복하고 관용으로 상징되는 단순한 공존을 넘어서는 정치통합을 목표로 할 것을 주장한다. 즉, 다문화 시대를 맞아 계급, 인종, 종교 등 다양한 영역의 차이가 심화되고 새로운 공존과 통합의 원리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민족국가 혹은 국민국가의 단일한 정체성을 극복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2. 변용된 인종주의의 극복

2005년 이후 정부의 다문화 정책 추진과 연동되어 확산되고 있는 반다문화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은, 다양한 직간접적 요인이 있겠지만, 인종주의와 순혈주의가 결합된 배타적 민족주의에 근본적으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²⁶⁾ 그런데 이러한 배타적 민족주의는 타자에 대한 혐오와 배제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도 문제이지만 그 타자에 서구와 백인의 이미지는 강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특성을 가진다. 특히, 외국인 유입에 반대하는 반다문화 현상이 기반하는 민족주의는 백인과 비백인, 서구와 비서구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서구중심적인 인종적 위계와 거의 유사한 효과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아시아적인 정체성을 열등한 것으로 규정하고 서구를 최고의 정점으로 간주하는 오리엔탈리즘의 특성이 동형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비서양으로서 아시아, 특히 한국에 많은 노동력을 공급하는 동남아 국가들은 경제적, 정치적으로 성공한 한국에 비해 열등한 정체성으로 간주되고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 우리는 인종적 우월감을 가지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비서구/아시아의 열등함을 내면화한다는 것이다.²⁷⁾ 결국, 일본의 인종적 위계와 마찬가지로 서양이

²⁶⁾ 한국에서 반다문화주의의 현상에 대한 논의는 다음의 논문 참조. 심승우, 「반다문화 현상과 다문화 정책철학의 제고방안」 『인문사회 21』 제7권 4호 (2016).

라는 표준에서 멀어질수록 그 국가·국민·문화는 열등함의 상징이자 혐오의 대상이 되는 바, 한국의 반다문화 정서와 활동이 거의 대부분 아시아계 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뿌리 깊은 인종주의적 시선이 작동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종주의는 ‘식민주의적 욕망’으로 평가할 수 있다.²⁸⁾

이러한 위계적 인종주의는 드라마, 영화 등 대중문화 상품과 직간접적 인 이주민과의 관계 등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의 의식과 태도에서도 작동하고 있다.²⁹⁾ 비록 외견상 결혼이주여성과 소위 다문화 가정 자녀들에게 대다수의 정주민 집단들은 연민과 시혜의 시선을 보내고 있지만 결혼이주여성의 주체성을 한국 국민의 주체성으로 진정으로 인정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또한 한국 사회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권리 규정에 대해 UN 및 국제인권단체의 수정 조치 권고 등 국제사회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인 노동권 보장에 머무는 것도, 국가적 차원의 경제적 실익 추구도 있겠지만, 주로 경제적으로 낙후한 아시아 국가에 대한 인종주의적 이미지, 그런 국가 출신 이주노동자들은 통제하기 쉬운 집단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비판할 수 있다. 만약 생산직에서 일하고 있는 미국이나 유럽 출신의 이주노동자들이 있었다면 정부의 관리 양상이나 시

27) 일본과 한국의 오리엔탈리즘의 동형성에 대해서는 다음의 저서를 참조. 강상중·이경덕·임성모·유희, 『오리엔탈리즘을 넘어서』 (서울: 이산, 1999).

28) ‘식민주의적 욕망’이라는 개념을 쓴 권혁범은 백인이 되고 싶어 하는 아프리카인들의 모순적인 심리를 통찰한 파농의 논의를 끌어오고 있다. 권혁범, 『국민으로부터의 탈퇴』 (서울: 삼인, 2004).

29) 영화나 드라마는 시민들의 의식과 문화에 영향을 주는 동시에 시민 의식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조선족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과연 영화에 의해 증폭된 것인지 아니면 시민들이 가진 조선족 이미지를 영화로 형상화한 것인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시민의식과 영상물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정혜실, 「미디어 속의 인종주의」 『2014 인종차별 실태 보고대회 자료집』 (2014).

민의 태도 등은 상당히 달랐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강력한 혈연적, 종족적 민족주의에 한정되지 않는다. 민족이란 흔히 혈통, 언어, 문화, 역사 등의 경험을 공유하는 집단이며 이 중에서 혈연과 언어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했을 때, 같은 혈통을 지닌 중국 조선족이나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인식이 다른 외국인 이주자들 보다 상대적으로 적어야 하겠지만, 경험적인 연구들에서 그러한 증거를 찾을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통계에 의하면, 대체적으로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차별, 온정주의적 시혜의식이 북한주민에게 큰 차이 없이 투영되고 있다는 것이다.³⁰⁾ 오히려 경제적 부와 산업화 수준을 기준으로 최고정점에 서구 선진국을 위치시키고 근대화 및 경제발전 수준에 따라 인종적 위계를 정하는 변용된 인종주의 혹은 한국화된 오리엔탈리즘이 강력하게 작동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백인적인 가치관, 서구중심적인 발전국가론에 입각하여 서구 국가들을 ‘이상적인’ 선진국에 위치짓고, 최하위에 후진국, 빈곤국가를 위치짓는 단선적인 근대화론의 변용인 동시에 이런 이분법적인 세계관을 재생산하는 서구의 패권을 재생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³¹⁾ 한국인이 아닌 자들을 위계적으로 분류하는 변용된 인종주의를 의미한다. 달리말해, 서구의 정치경제체제를 표준에 놓고 그와 유사한 정치제도와 법, 경제제도 등에 따른 국적별로 차별과 배제의 시선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2010년대 초반, 미등록 노동자(불법체류노동자)에 대한 대

30) 다양한 통계 결과 및 연관된 설명으로는 다음의 보고서를 참조. 윤인진 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인식 및 차별실태조사』 (2016).

31) 경제력과 문명우월주의의 인종주의적 함의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 김종태, 「다문화 대중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민족주의, 선진국 담론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민족연구』 제50권 (2012).

대적인 단속 추방이 집행되던 당시에, 방글라데시 출신인 지방대 교수가 교수 신분증을 보여줘도 경찰의 눈에는 그것이 위조된 신분증이며 악질적인 불법체류자의 범죄로 인식되었기에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구금에 이르게 만들었던 것이다. 아울러 서구적인 척도에서 ‘후진국’ 국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그대로 이주민에게도 적용되는바, 이주민 개개인의 존엄성과 특성을 무시하고 과도하게 일반화, 집단화하고 있다. 이주민들의 모국에서의 경력이나 사회적 지위, 연령, 성별 등의 개인적 차이가 작동할 여지는 별로 없어 보인다.

이처럼, 개개인이나 고유한 집단별 특성을 사상되고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북한이탈주민’으로 통칭되는 몰개성적인, 몰가치적인 집단성이 지배하는 것은, ‘아프리카계’ ‘아시아계’ ‘라틴계’ 등 비백인계 미국인을 대상으로 서구에서 작동했던 인종주의적 시선의 변용일 수 있다. 이런 시선은 남한 정주민 집단과 질적으로 다른 이주민들의 문화적 특수성을 이해할 수 있는 세계관 자체를 결여하는 경우가 많다. 누군가는 이주민의 인권과 한국의 반다문화 현상을 분석하면서 중요한 특징 중 하나로 이주민의 출신국가의 경제력에 따라서 차별적인 태도를 보이는 ‘GDP 인종주의’를 강조했는데,³²⁾ 이것은 한국 정주민 집단이 세계 국가들의 경제지표를 정확히 알아서 작동한다기보다는 막연한 군집으로서의 선진국 중심, 백인 중심적 사고편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다.³³⁾ 이주민에 대한 시선에 작용하는 것은 혈통적 우월주의가 아니라, 어쩌면 서구의 ‘백인 우월주의(white supremacy)’와 동형적인 국적과 인종

32) GDP 인종주의는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 저자로 유명한 홍세화 선생이 2013년 무렵부터 다양한 언론 매체에 관련 글을 기고하면서 확산된 용어이다. 특히 2016년 2월 11일에 프레스이안에 기고한 칼럼 “GDP 인종주의, 당신은 자유롭습니까?”를 참조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133025>>)

33) 전영선, 「북한이탈주민과 한국인의 집단적 경계 만들기 또는 은밀한 적대감」 『통일인문학』 제58권 (2014), 99~126쪽.

이 결합된 ‘남한 우월주의’가 아닐까.³⁴⁾

3. 민족성의 재구성과 정치통합

민족성과 종족성을 명료하게 구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종종 큰 구분 없이 사용되는 경우도 많다. 여기서는 혈통주의적, 생물학적 특성을 강조하는 종족성과 대비하여 후천적, 문화적 특성을 강조하는 민족성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이는 에스니시티(ethnicity)라는 개념의 번역 문제와도 관련이 있는데, 논 연구의 맥락에서는 에스니시티를 선천적 에스니시티와 후천적 에스니시티의 혼종으로 정의하고자 한다.³⁵⁾ 이 경우에 후천적 에스니시티로서 민족성은 문화적 성격이 강하며 개인이 성장하면서 외부사회와의 교류를 통해 공동체의 가치와 규범 등 문화체계를 수용하면서 형성되는 것으로 이해한다.³⁶⁾ 일종의 상상력을 발휘한다면, 근대 민족국가에서 에스니시티는 선천적 특성과 후천적 특성 사이의 어딘가

34) 한국적 상황에서 특수한 이주민이자 소수자의 정체성을 가진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이 필요하다는 심사자의 지적이 있었지만 이번 기획의 특성상 본 논문은 외국인 이주민에 집중하고 있는 바, 본 논문의 분석틀을 북한이탈주민에 적용하는 논자의 연구는 다음 기회를 약속드린다.

35) 에스니시티와 다문화주의의 관계에 대한 최근의 연구로는 김무인, 『다문화 쇼크』 (파주: 북저널리즘, 2022). 특히 1장에 관련 논의가 흥미롭게 전개되고 있다. 과거 김기홍의 연구도 유의미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김기홍, 『한국의 다문화사회 실현을 위한 이론적 연구: 에스니시티와 다문화주의의 통합을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제12권 3호 (2012).

36) 사실 본 연구가 보다 정교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종족 혹은 민족이 어떻게 만들어지며, 이른바 종족의 갈등 관계가 어떤 이유에서 출발해 어떤 형태로 진행되는지, 특히 ‘한국인다움’ 혹은 ‘단일민족주의’라는 민족적 혹은 종족적 정체성을 ‘발명’하고 ‘타자화’하는 행위가 어떤 메카니즘 속에서 이루어지는지를 분석하는 것과 긴밀하게 연동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관련하여 국내 연구자들의 탁월한 성과로는 김광억, 『종족과 민족』 (파주: 아카넷, 2005).

에 불확정적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한 개인 혹은 집단의 에스니시티는 두 특성의 중간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경제적, 역사적 상황과 맥락, 권력관계의 역동성 속에서 선천성에 가까워질 수도 있고 후천성에 가까워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우승한 독일 대표팀의 영웅이었던 외질은 민족성의 차원에서 독일인으로 환영받았지만, 2018년 월드컵에서 독일 대표팀이 조별 예선에서 탈락하고 그의 혈통적 모국인 터키 대통령과 찍은 사진이 문제가 되면서 “외질을 고향으로 추방하라!”는 인종차별적 구호까지 받게 되었다. 상황에 따라 선천적 에스니시티가 후천적 특성을 압도하는 것이다. 독일 국민들의 비난 앞에서 외질은 “내 심장은 두 개다. 하나는 독일인의 심장, 하나는 터키인의 심장이다”라고 항변하면서 대표팀에서 은퇴를 했다.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는 밀러(Miller)의 정치적 민족성에 기반하여 다문화 시대의 민족성의 재구성 전략을 모색해본다. 밀러에 의하면, 민족은 “공통의 믿음과 상호귀속감에 의해 형성된 역사 속에서 지속되는 성격상 능동적이고 특정 영토를 기반으로 하면서 독특한 공공문화(public culture)를 공유함으로써 형성되는 것”으로 정의된다.³⁷⁾ 그리고 민족성은 이러한 공공문화를 핵심적인 속성으로 삼는 바, 공통의(common) 공공문화는 정치적 원칙이나 사회적 규범을 포함하여 함께 살아가는 사회적 생활과 행동양식에 대한 일련의 이해들을 의미한다. 이런 맥락에서 민족성은 어떤 사회에서 사람들의 개인적, 사회적, 정치적 삶과 생활을 조직하는 특정한 관행과 사유방식, 실천방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민족성은 앞에서 언급한 후천적 에스니시티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민족성은 정치공동체의 공동의

³⁷⁾ Miller, D., *On Nationality* (New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pp. 41-42.

가치와 규범을 공유하고 있다는 공통의 믿음과 귀속감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며, 중요한 것은 공공문화로 특징지어지는 민족성을 공유하기 위해 생물학적 혈연에 기반한 인종적, 종족적 동질성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처럼 민족성을 광범위하게 정의한다면, 한 국가의 정치사회문화의 특징으로 설명될 수 있는바, 예컨대 평등과 재분배 등 정치적, 경제적 민주주의 같은 가치들을 중시하는 시민성도 민족성을 구성하는 요소가 될 수 있으며, 사람들을 결속시키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투쟁하게 만드는 민족성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현실적으로 특정 국가 혹은 정치공동체의 공공문화의 기반이 되는 민족성이 종족적 요소(ethnic ingredients)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즉, 민족성은 한 국가의 정치사회문화의 특성으로 설명될 수 있지만 외모나 피부색, 혈통적 순수성 같은 종족적 요소와 전통적인 의미의 민족문화도 민족성을 구성하는 강력한 요소 중 하나가 될 것이다.³⁸⁾

기본적으로 민족성은 종종 어떤 특정 영토 내에서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특정 종족집단을 기반으로 형성되며 따라서 언어, 종교, 문화적 정체성 등에서 특정 종족 집단의 특징들을 그대로 간직하는 성향이 강하다. 그러나 밀려나는 사람들은 하나의 배타적인 민족성을 가지는 것은 아님을 강조한다. 즉, '중첩된 민족적 정체성(nested national identities)'이라는 개념을 통해 사람들은 두 개 이상의 민족성을 가질 수 있으며 그 민족성 역시 고정불변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한다. 예컨대, 위에서 살펴본 독일의 3세대 이주민이자 국가대표 선수였던 외질의 경우가 그러하고 캐나다, 스위스 등 비교적 성공적인 다민족 민주주의 국가들은 시민들 사이에 공유된 정서적 정체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개인이

³⁸⁾ D. Miller, *On Nationality*, pp. 122-123.

나 집단들은 다른 민족성에 의존할 수 있다. 예컨대, 나는 프랑스나 이탈리아가 모국이지만 오랫동안 국적을 취득하여 살고 있는 스위스 국민임에 대해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배적인 민족성이 현재의 정체성과 공공문화를 보존함으로써만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벤하비브는 공공문화의 규범적 조건으로서 보편적 존중, 평등적 상호성, 자유의지에 따른 귀속과 탈퇴의 자유 등을 공공문화의 중요한 조건으로 강조하는 바, 공공문화를 공유하면서 공동의 정체성과 소속감, 그에 따르는 특별한 책임감을 인식한다면 어떤 사람도 자신의 인종이나 종족적 배경에 상관없이 특정 민족국가의 구성원 즉 국민이 될 수 있으며 성원권을 가진 시민들은 민주적 의사결정과 심의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³⁹⁾

이러한 민족성의 재구성과 관련하여 ‘소수자의 정치학’이 중요한 전략적 함의를 가진다.⁴⁰⁾ 현실 속에서 일정 정도 배타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민족성을 더욱 포용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소수집단의 수정 요구가 종족적 주류집단의 주장과 충돌할 경우 그것은 어떤 식으로든 공공문화의 변화를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소수집단은 지배적인 민족성의 변화와 수정을 요구하면서 정주민 주류집단 내부에서도 민족성의 변화를 주창하는 세력들과 연대를 형성하면서 민주주의를 확장하는 정치적 실천을 조직화할 수 있다. 미국에서 1960년대 흑인민권운동이 마틴 루터 킹 목사 같은 흑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양심적인 백인 지식인

39) 벤 하비브는 자신의 저서 4장에서 이런 내용을 제시하면서 이러한 공공문화가 세계시민주의, 사해동포주의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Benhabib, Seyla, 이상훈 옮김, 『타자의 권리』 (서울: 철학과 현실사, 2008).

40) 넓은 의미에서 페미니즘을 포함하는 소수자의 정치학에 대해서는 다음의 저서를 참조. Young, I., “Activist Challenges to Deliberation Democracy.” James S. Fishkin and Peter Laslett eds., *Debating Deliberative Democracy* (Oxford: Blackwell, 2003).

및 시민사회 활동가들과 접촉하여 미국의 시민문화뿐만 아니라 연방대 법원의 판례까지 변화시키면서 당시 지배적인 ‘흑백분리’ 원칙의 위헌 판결을 받아내고 백인 중심의 미국 민주주의의 외연을 확장시킨 것이 대표적이다.

이처럼 이주민뿐만 아니라 주류 집단 내부의 다양한 소수자의 운동은 기존의 지배적인 사회적·정치적 정체성과 고정된 사고틀을 해체하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고 소수자 집단 자체의 평등한 자유뿐만 아니라 인민 대중 전체의 다문화적 능력을 촉발시키면서 보다 견고하고 민주적인 사회통합을 일구어낼 수 있는 기반이자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단일민족국가로 분류되는 대한민국 역시 선천적 에스니시티 즉, 혈통적·생물학적 종족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일제의 식민지배 및 반제국주의 투쟁, 해방 이후 정치사회적 근대화 과정에서 이러한 성격이 더욱 강화되었지만 2000년대 이후 다문화 현상이 증가하면서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의 영역에서 순혈주의적 민족성은 점차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물론, 주류집단의 민족성이 획기적이고 근본적으로 변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당연히 민족성 변화 및 수정에 대한 소수집단의 요구 역시 타협적인 내용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컨대, 자유주의 국가의 이민자로서 이슬람 교도들은 표현과 종교, 사상의 자유 등 민주주의와 법치라는 기존의 공공문화에 담긴 지배적인 민족성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정치적 성원권(political membership)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밀리는 인종이나 종족, 종교의 영향력을 최대한 제어하는 동시에 공통의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두 데모스(demos)에 포함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⁴¹⁾ 데모스의 경계는 민주적 절차와 원칙

41) 아테네 도시국가에서 정치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시민(남성)을 의미하는 데모

에 대한 충성심을 공유하는 사람 및 구성원들 사이의 영속적이고 개방적인 대화 과정 속에서 계속 변화하는 유동적으로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정치공동체의 의사결정과 심의과정에 그 공동체의 '국민'들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의 특정한 민주적 절차와 원칙에 대한 충성심을 공유하는 외국인 이주민의 참여를 허용해 나간다면, 데모스의 범위를 계속 확대할 수 있으며 이런 실천 과정에서 혈연적, 선천적 종족성이 가진 배타성을 완화 혹은 순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⁴²⁾

V. 나오며: 다문화 사회통합을 위한 국가의 역할?

사실 한국 사회가 다문화주의로 나아갈지, 동화주의 모형으로 나아갈지, 아니면 차별배제 모형을 더욱 강화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 국민적인 논의가 진지하고 광범위하며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시대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 최근 이민청 논의가 학술적, 정책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것처럼, 이주민의 인권과 시민권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

스는 democracy의 어원이 되는 용어로 보통은 인민이 스스로 통치한다는 민주주의 주체를 의미한다. 본 논문의 맥락에서는 통치에 참여할 구성원의 자격과 기준이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데모스를 사용했다. 사실, 데모스 개념 자체는 아테네 시대에도 종종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는 바, 플라톤은 빈민이나 하층민 등 정치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자들을 경멸하는 의미에서 데모스를 사용하기도 했다. 포폴리즘도 이런 부정적인 데모스 개념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플라톤적 정치는 이질성과 외부성을 철저히 거부하는 정치로 비판받기도 한다.

⁴²⁾ Miller, D., "Republicanism, National identity, and Europe", Laborde and Maynor eds, *Republicanism and Political Theory* (Oxford: Blackwell, 2008), pp. 140-146.

극적인 논의와 모색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적이나 영주권을 취득한 이주민들에게 한국의 고유한 문화, 세계관,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일방적인 수용과 흡수를 의미하는 동화적 적응으로부터 이주민의 문화적 배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 사회 적응방안을 모색하는 연구의 흐름도 강력하게 형성되고 있다. 이는 이주민을 일방적인 동화의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의 실존적 주체성을 인정하고 그들이 소수자로서 한국의 정주민 집단과 상호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 규범적인 문제 의식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사실 인종적 시선과 위계적 이분법의 극복은 다문화주의가 아니더라도 모든 인간을 평등한 존엄성을 가진 존재로 대우해야 한다는 민주주의 논리에 의해서도 시급히 극복해야 할 과제임은 분명하다. 그래서 UN 인권위원회 등과 같은 국제사회에서도 한국 정부를 향해 경제적 위상과 민주주의 발전 수준에 맞는 이주민의 인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우리 정치공동체에서 살아가는 누군가가 주민으로서 살아가면서 노동과 납세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에 기여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소외와 배제, 억압을 당한다면, 그것은 이론의 여지 없이 민주주의 원리에 위배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이 진정한 인권공화국이고 모두의 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가 가고자 한다면, 그리고 만일 이러한 국가 목표와 다문화 사회통합 정책 철학에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그러한 공동선과 미덕의 증진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는 “모든 정치적 행위의 목적은 개인들이 유효한 좋은 삶을 추구하고 덕스러운 삶의 방식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는 조셉 라즈의 완전주의적 모델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⁴³⁾

43) 라즈는 『자유의 도덕원리(The Morality of Freedom)』(1986)에서 비중립주의적 자유주의를 비판하면서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공동선과 그에 부합하는 권리와 의무, 상호관계를 장려하는 새로운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라즈의

중립주의적 국가관이 국가는 모든 가치관, 세계관, 삶의 방식 등에서 중립을 추구해야 하고 시민들이 스스로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에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 완전주의적 국가관은 국가(정치)가 적극적인 가치 판단을 통해 도덕적으로 건전하고 올바른 것들을 적극 장려해야 한다는 국가관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속선에서 마이클 샌델 역시 정의로운 국가는 자유주의적 권리를 우선시하는 중립주의를 넘어서 공동선을 실현하기 위해 공동체의 핵심적, 필수적인 요소로서 시민의 미덕(virtue)을 장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개인의 자율성(결정과 책임)을 존중하면서도 민주적으로 합의된 공동선(미덕 증진)을 추구하는 국가와 공동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동시에 시민적 참여를 통해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 및 공통 운명체를 체감하고 연대와 유대감 함양할 수 있는 시민권을 강조하는 것이다. 물론 여기서 공동선은 특정한 공동체의 전통이나 관행을 넘어서 다양한 가치와 시각을 가진 자율적인 시민들의 상호소통 속에서 공동의 정체성에 기반하여 정치적으로 구성되어지는 것이다.⁴⁴⁾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다문화 사회통합을 위해 국가는 시민사회와 민주적이고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다문화주의에 대한 국가의 비전 및 바람직한 시민의 의무와 권리를 제안할 수 있어야 한다. 앞으로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는 다문화 시대에 종족적·종교적 귀속감이 다르고 생활방식이 상이한 개인과 집단들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특수한 정체성과 소속감

완전주의에 관한 쟁점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 참조. 김비환, 「라즈의 자유주의적 완전주의의 전제들 : 자율성, 다원주의 그리고 실천철학」 『법철학 연구』 제 4권 1호 (2001).

⁴⁴⁾ 샌델은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일관되게 자유지상주의, 공리주의, 중립주의적 자유주의 등을 비판하면서 이러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Sandel, M., 이창신 역, 『정의란 무엇인가』 (파주: 김영사, 2010). 특히, 9장과 10장에서 이런 주장을 명료하게 전개하고 있다.

을 넘어 사익이나 집단적 이해를 극복할 수 있는 공통의 정체성과 상호 신뢰가 필요하기 때문에, 특정한 정치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다는 정서를 공유한 사람들을 하나의 묶어줄 수 있는 헌정주의적, 민주적 정체성을 구성하는 것이 사회통합의 근본적인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밀러의 주장처럼, 민족성 혹은 민족적 정체성을 동일적이고 획일적인 것, 고정불변의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형성되어가는 진행형으로 사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정주민 집단, 다수자 집단 내부의 성찰과 소수 집단의 포용 등을 통해 시대적 과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미래 지향적인 민족성을 함양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상식적인 주장이지만, 종족적 주류 집단이든 새로운 인종집단이든 구성원들이 정치공동체의 동료시민이라는 민주적인 소속감과 공동의 운명체임을 체감해 가는 것, 서로에 대한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공동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은 다문화주의를 넘어서는 사회통합의 과제이다. 이런 모색과 노력은 다문화 시대의 민주적인 민족성을 재구성하는 과정과 중첩되며 다문화 사회통합을 위한 민주주의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완전주의적 국가관이 지지하는 정치의 역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접수: 2022년 11월 1일 / 심사: 2022년 11월 25일 / 게재 확정: 2022년 12월 1일

【참고문헌】

- 강상중 · 이경덕 · 임성모 옮김, 『오리엔탈리즘을 넘어서』, 서울: 이산, 1999.
- 권혁범, 『국민으로부터의 탈퇴』, 서울: 삼인, 2004.
- 김무인, 『다문화 쇼크』, 파주: 북저널리즘, 2022.
- 윤인진 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인식 및 차별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16.
- 최종렬 외, 『다문화주의의 이론적 패러다임과 국가별 유형비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8-17-02, 2008.
- Agamben, J. 박진우 옮김, 『호모 사케르 - 주권 권력과 별거벗은 생명』, 파주: 새물결, 2008.
- Arendt, H. 이진우 역, 『전체주의의 기원』 1권, 파주: 한길사, 2006.
- Benhabib, Sa. 이상훈 옮김, 『타자의 권리』, 서울: 철학과 현실사, 2008.
- Brown, W., *REGULATING AVERSION: Tolerance in the Age of Identity and Empir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6.
- Martiniello, M., 윤진 옮김, 『현대사회와 다문화주의』, 파주: 한올아카데미, 2008.
- Miller, D., *On Nationality*, New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 Sandel, M., 이창신 역, 『정의란 무엇인가』, 파주: 김영사, 2010.
- 김기홍, 「한국의 다문화사회 실현을 위한 이론적 연구: 에스니시티와 다문화주의의 통합을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제12권 3호, 2012.
- 김비환, 「라즈의 자유주의적 완전주의의 전제들 : 자율성, 다원주의 그리고 실천 철학」 『법철학 연구』 제4권 1호, 2001.
- _____, 「한국사회의 문화적 다양화와 사회통합: 다문화주의의 한국적 변용과 시민권 문제」 『법철학연구』 제10권 2호, 2007.
- 김영재,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 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이주노동자 정책을 중심으로」 『평화학연구』 제21권 4호, 2020.
- 김형민, 「사회통합을 위한 패러다임 모색」 『통합유럽연구』 제12권 1호, 2021.
- 김혜순, 「결혼이민여성의 이혼과 '다문화정책': 관료적 확장에 따른 가족정책의 물이민적, 물성적 결합」 『한국사회학』 제48권 1호, 2014.

- 변보기, 「결혼이주여성의 다문화시민권과 사회통합」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통권 38호, 2017.
- 심승우, 「인권의 급진화와 이주노동자의 주체화」 『다문화와 평화』 제7권 1호, 2013.
- 심승우, 「반다문화 현상과 다문화 정책철학의 제고방안」 『인문사회 21』 제7권 4호, 2016.
- 엄한진, 「서구가 바라본 오리엔트, 오리엔트가 바라본 서구」 『문화와 사회』 제19권, 2015.
- 이진영, 「이주노동자 정책을 보는 시각과 정책 형성」 『한국의 다문화 사회통합정책: 종합평가와 전망』, 2012-12 사회통합위원회 용역보고서, 2012.
- 정성신, 「미등록 이주노동자에서 이주민 미디어 활동가로 : MWTV 미디어 활동가 사례를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제18권 1호, 2012.
- 정혜실, 「미디어 속의 인종주의」 『2014 인종차별 실태 보고대회 자료집』, 아시아 인권문화연대, 2014.
- 한건수, 「한국사회의 다문화주의 혐오증과 실패론 : 어떤 다문화주의인가?」 『다문화와 인간』 제1권 1호, 2012.
-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 『2019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2020.
- McLaren, P., "White Terror and Oppositional Agency: Toward a Critical Multiculturalism", David Theo Goldberg (ed), *Multiculturalism: A Critical Reader*, Oxford: Blackwell Press, 1994.
- Miller, D., "Republicanism, National identity, and Europe", Laborde and Maynor eds, *Republicanism and Political Theory*, Oxford: Blackwell, 2008.
- Miller, D., "Interview with Professor Miller: 밀러 교수와의 대화", 곽준혁 편, 『경제와 편견을 넘어서: 우리시대 정치철학자들과의 대화』, 파주: 한길사, 2010.
- Young, I., "Activist Challenges to Deliberation Democracy", James S. Fishkin and Peter Laslett eds., *Debating Deliberative Democracy*, Oxford: Blackwell, 2003.

Multiculturalism and Social Integration in Korea

Sim, Seungwoo (Sungkyunkwan University)

Abstract

This article critically reviews the fundamental limitations inherent in multiculturalism policies and discourses in the West and Korea. In particular, this paper seeks the direction of social integration that can overcome racism and ethnic race. The critical multiculturalism based on this paper criticizes that the dominant multiculturalism has not overcome the fundamentally deep-rooted racist dichotomy and orientalism. It is also criticized for relying too much on tolerance discourse and consequently turning a blind eye to dominance and inequality in reality. Moreover, mainstream multiculturalism criticizes that it does not effectively construct the power and strategy to overcome such practical limitations. This paper emphasizes that the white-centered racial hierarchies are projected on migrant and minority groups in a Korean context, and stresses that overcoming the limitations of Korean racism and reconstructing exclusive ethnicity is a prerequisite for true multicultural social integration. In particular, this paper emphasizes that if Korean society seeks to move toward a multicultural country in the future, it needs a perfectionist view of citizens' rights, obligations, and citizenship to promote the common good of multicultural social integration.

Keywords: Multiculturalism, Social Integration, Migrant, Ethnicity, Perfectionism

심승우 (Sim, Seungwoo)

성균관대학교 좋은민주주의연구센터 학술연구교수이자 서울교대, 대구대 등에서 강의하고 있다. 성균관대학교에서 『다문화 민주주의의 이론적 기초: 소수자의 주체성과 통치성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저서로는 『다문화 시대의 도전과 정치통합의 전략』(2014), 『더 많은 민주주의를 향하여』(공저, 2021), 『시민의 조건, 민주주의를 읽는 시간』(공저, 2022) 등이 있으며 역서로는 『테러리즘: 누군가의 해방 투쟁』(2010), 『민주화운동의 어머니: 아웅산 수치 평전』(2013) 등이 있다.